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95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김태선 · 이병진 · 안호영
김주영 · 박홍배 · 박 정
이학영 · 이용우 · 허 영
김병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며, 노동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
-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각각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勤勞者の날制定에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⑦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⑨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